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- 1530호

-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-
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
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6. 9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용자규모 : 150억원

2. 용자대상 :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*
 (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)

*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3. 용자내용

- 용자한도 : 최대 3천만원 이내
- 대출은행 :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- 용자기간 : 5년 이내
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 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-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
4. 용자 제외대상

-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
-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(용자한도 차감)
- 재단·신보·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
-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(압류·가압류·경매·가처분 등)
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
- 사치·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(별첨 「보증제한업종」 참조),
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(연체, 체납 등)